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62
----------	------

발의연월일 : 2017. 7. 12.
발의자 : 염동열 · 김성원 · 박인숙
이은재 · 홍문표 · 박명재
홍문종 · 김명연 · 성일종
정태옥 · 권성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회 지식재산을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법령에 따라 출원·등록을 하고, 상호 계약을 통해 대회 지식재산의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를 중계 할 권리를 가진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나,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이나 사업에 사용하거나, 대회 후원사가 아닌 비후원사가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통해서 대

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 범위를 대회 관련 상징물에서 지식재산으로 확대하고,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자가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정당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 중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및 제89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대
회 관련 저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
는 경우
2.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
아 사용하는 경우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대회 또는 대회 경기를 보도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
는 경우
4.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도록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4(침해 금지 청구 등) ① 조직위원회는 제25조 또는 제25조의 3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5(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인 경우에
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
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
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
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6(적용 배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89조 중 “제25조를”을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u></p> <p><u>직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u></p> <p><u>코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p> <p><u>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u></p> <p><u>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u></p> <p><u>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u></p> <p><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p> <p><u>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u></p> <p><u>하지 아니하다.</u></p>	<p><u>제25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u></p> <p><u>직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u></p> <p><u>코트, 대회 관련 저작물 등 대통</u></p> <p><u>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관련</u></p> <p><u>지식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u></p> <p><u>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u></p> <p><u>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u></p> <p><u>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u></p> <p><u>니하다.</u></p> <p>1.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p> <p>2.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p> <p>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가 대회 또는 대회 경기를 보도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p> <p>4.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p>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p>

<신 설>

는 경우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도록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5조의4(침해 금지 청구 등) ① 조직위원회는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이 법에 따른 공소가 제

기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신청
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5(과징금)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제25조 또는 제25
조의3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
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
를 한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 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u><신 설></u></p> <p>제89조(별 칙) <u>제25조</u>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u></p> <p><u>제25조의6(적용 배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제89조(별 칙) <u>제25조 또는 제25조의3을</u>----- -----.</p>
--	---